



목 포 시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703호 2025. 8. 4. (월)

고시 · 공고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2
- 「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
- 「목포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9

회람							
----	--	--	--	--	--	--	--

발행 : 목포시 편집 : 홍보과 ☎ 061-270-8539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건물 멸실되어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물 등에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일

목 포 시 장

○ 도로명주소 폐지 목록

연번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지번 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 사유
붙임 참조				

※ 고시 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061-270-8313)에 문의 또는 목포시청 홈페이지(www.mokpo.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실제 주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해당 위치에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붙임 : 도로명주소 폐지 목록

연번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지번 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 사유
1	목포시 호정로31번길 14-1	목포시 산정동 74-154	2025.8.1.	건물 멸실
2	목포시 철로마을길 21	목포시 산정동 147	2025.8.1.	건물 멸실
3	목포시 산정공단로 63	목포시 연산동 1243-8	2025.8.1.	건물 멸실
4	목포시 죽교천로 78	목포시 산정동 1683-10	2025.8.1.	건물 멸실
5	목포시 삼각로 13	목포시 상동 922-5	2025.8.1.	건물 멸실
6	목포시 비파로 1	목포시 상동 1024	2025.8.1.	건물 멸실
7	목포시 까치머리길 18	목포시 연산동 626-13, 626-3	2025.8.1.	건물 멸실
8	목포시 평화로101번길 14	목포시 상동 1140-18	2025.8.1.	건물 멸실
9	목포시 삼학로18번길 11-9	목포시 호남동 12-18, 12-19, 12-30	2025.8.1.	건물 멸실
10	목포시 백년대로56번길 1	목포시 용당동 1157-9	2025.8.1.	건물 멸실
11	목포시 산대로 50-1	목포시 산정동 64-2	2025.8.1.	건물 멸실
12	목포시 죽산로 13-1	목포시 산정동 1741-12	2025.8.1.	건물 멸실
13	목포시 해안로259번길 39-6	목포시 상락동2가 3-7	2025.8.1.	건물 멸실
14	목포시 북항로 143	목포시 죽교동 536-25	2025.8.1.	건물 멸실
15	목포시 용해로 42-3	목포시 용당동 1144-20	2025.8.1.	건물 멸실
16	목포시 보리마당로 3-1	목포시 서산동 19-5	2025.8.1.	건물 멸실
17	목포시 산대로 27	목포시 산정동 1048, 1048-4, 1048-8, 1068	2025.8.1.	건물 멸실
18	목포시 산대로 27-1	목포시 산정동 1048-8, 1048-17, 1068	2025.8.1.	건물 멸실
19	목포시 달성길91번길 8	목포시 죽교동 57-36	2025.8.1.	건물 멸실
20	목포시 달성길91번길 8-8	목포시 죽교동 57-9	2025.8.1.	건물 멸실
21	목포시 수강로4번길 34-5	목포시 축복동1가 3-37	2025.8.1.	건물 멸실
22	목포시 삼일로 28	목포시 호남동 7-58	2025.8.1.	건물 멸실

연번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지번 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 사유
23	목포시 삼일로 28-1	목포시 호남동 7-42	2025.8.1.	건물 멸실
24	목포시 산정로79번길 15-5	목포시 산정동 1093-28	2025.8.1.	건물 멸실
25	목포시 달성길91번길 8-2	목포시 죽교동 57-49, 57-35	2025.8.1.	건물 멸실
26	목포시 호남로9번길 6-1	목포시 양동 126-10	2025.8.1.	건물 멸실
27	목포시 불종대길12번길 3	북교동 135-14, 135-18	2025.8.1.	건물 멸실
28	목포시 해안로237번길 30-8	목포시 북만동 3-69, 3-70	2025.8.1.	건물 멸실
29	목포시 달성길105번길 6-2	목포시 죽교동 89-58	2025.8.1.	건물 멸실
30	목포시 죽선로17번길 14-1	목포시 죽교동 71-9	2025.8.1.	건물 멸실
31	목포시 안태길26번길 3-3	목포시 용해동 278-1	2025.8.1.	건물 멸실
32	목포시 영산로 123	목포시 명륜동 1, 19-2	2025.8.1.	건물 멸실

「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4.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현행조례 제23조(부담금의 징수) 개정을 통한 행정적 혼선 최소화

- 제23조제2항은 부담금 납부에 대한 구체적 기한의 정함이 없어 납부 시점 명시 필요
- 제23조제3항은 과태료 체납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현행법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과태료 체납에 대한 징수 기준이 명시 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내용 수정 필요

2. 주요내용

- 제23조제2항에서 “30일” 앞에 “납부고지일로부터”를 추가하여 정확한 납부 시점 명시

- 제23조제3항은 도시숲 내 시설물을 훼손했을 때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이 조항과 무관한 과태료 체납에 대한 조문 삭제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대상 여부(감사실) : 원안동의
- 규제심사 대상 여부(기획예산과) :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여성가족과) : 해당 없음

7. 예산사항 : 해당 없음

8. 입법예고 기간 : 2025. 8. 4. ~ 2025. 8. 14. (11일간)

9.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 없음

10.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8월 11일까지 목포시장(공원녹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전남 목포시 수문로32(남교동) 목포시청 공원녹지과

다. 제출 방법 : 우편, 팩스(061-270-3584), 직접방문 등

11.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공원녹지과(☎ 061-270-35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30일”을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22조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11조 별표3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목포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4.

목 포 시 장

1. 조 례 명 : 「목포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목포시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더욱 철저한 보호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목포시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정의 및 적용대상(안 제2조~제3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시스템 관리책임자 지정 및 역할(안 제8조~제9조)
-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안 제10조~제13조)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안 제16조)

4. 제정조례안 : 별첨

5. 관계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분석평가(감사실) :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과) : 개선의견 반영
- 입법안 심사(기획예산과) : 의견없음

7. 입법예고 기간 : 2025. 8. 4. ~ 2025. 8. 24. [21일간]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없음

9.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8월 24일까지 목포시장(스마트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제출 방법 : 우편, FAX(061-270-3586), 직접 방문

다.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스마트정보과

10.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스마트정보과(☎ 061-270-32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목포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3.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그밖에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목포시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목포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포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7조(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업무 담당자로부터 보고 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담당 부서 내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만을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개인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의 권한 관리
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자 기록 관리 및 점검
3.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 조치

제10조(개인정보파일 관리)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소속된 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의 흠이 확인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등록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소속된 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법 제34조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 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 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4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정보 출력물에 대한 안전조치)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인쇄할 때,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인쇄할 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4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시장은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열람 등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등을 준용하여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 등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목포시가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제15조(이의신청)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성인지 교육)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에는 디지털 성범죄, 위치정보 악용 등 성인지 기반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와 대응 방안도 포함하여야 한다.

제17조(보험·공제 등의 가입) 시장은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8조(고발 및 징계) 시장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법 위반에 따른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 및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기관명					
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조치 및 결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담당부서·담당자 및 연락처		성명	부서	직위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취급자				

유출신고접수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